

연구개발 아웃소싱 시대 열렸다!

과기부, 연구개발 서비스업 도입 ... 세제 · 고용 지원으로 육성

연구개발(R&D)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<R&D 아웃소싱> 시대가 열리게 됐다.

과학기술부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<연구개발서비스업>의 법적 근거를 담은 <이공계 지원특별법>이 5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육성 · 지원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5월31일 발표했다.

연구개발서비스업은 관련업무에 관한 용역을 위탁받아 일정한 용역비용을 받고 업무를 대신해주는 <연구개발 아웃소싱> 사업으로,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 개발하는 <연구개발업>과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, 컨설팅, 시험 · 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<연구개발지원업> 2가지로 구분된다.

일정요건을 갖추고 과기부에 신고절차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되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돼 세금감면 등 각종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.

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이공계 인력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 <전문연구인력 활용 지원사업>도 시행한다.

과기부는 2007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.

이밖에도 병무청과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, 기술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.

아울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에서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하고 있으며,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협회의 설립 · 운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.

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하려면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, 독립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연구개발지원업은 이공계 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.

과기부는 2007년 첫 시행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제에 따라 2007년 20-25개, 2008년에는 6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, 2010년까지 총 300개 이상의 신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해 전문인력 50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5/31>